

2023. 9. 11(월). 10:00
제2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도시교통위원회
전문위원

남양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남양주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3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『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』 존속기한 만료 예정(2023년 12월 31일)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7조)

구분	개정 후
개정	제7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덧붙임

-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4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(안)은 ‘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’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31일로 만료되어 이를 2028년 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코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2023년 9월 5일

도시교통전문위원 윤 선 기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